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0. 9. 14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9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(2010년 9월 7일)  
상정 의결

#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(안 제3조)
-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9조)
-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부터 제15조)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사회적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(2007.7.1. 시행)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1조·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,
-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지원·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·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·조세감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의 참여기업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審査結課 : 原案 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7 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(안 제3조)
- 나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 (안 제9조)
- 다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0조부터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
- 2)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

### 나. 예산조치 : 2011년 예산편성 예정

### 다. 합 의 : 필요없음

###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'10. 5.13. ~ 6. 2. 20일간)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없음.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적기업”이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.
2. “예비사회적기업”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,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.
3. “서울형사회적기업”이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 서울시에서 법 제8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.
4. “취약계층”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.
5. “사회서비스”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
6. “연계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원회 설치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서울형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(이하 “사회적기업 등”이라 한다)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

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
3.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
2.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**제8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9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**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
2.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,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·육성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,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경영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원업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설비 등 지원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재정지원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, 사업실적 보고,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·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4조(우선구매 등 지원)**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15조(구세감면)**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16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** 구청장은 영등포구 내 민간기업·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1. 영등포구 관내 민간기업·단체 간 교류·협력 네트워크의 구축·운영 지원
2.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

**제17조(홍보 등)**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
1. 영등포구 관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영등포구 관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지원
3. 전문가 포럼,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

**제1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